



# 대체승인절차(AAP) 개정에 관한 TSAG(2005. 11) 논의 결과

TTA 표준화본부 전략기획팀 선임연구원 **박 중 봉**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사무관 **최 인 현**

## 1. 논의의 배경

### 가. 대체승인절차(Alternative Approval Process – AAP, ITU-T 권고 A.8)에 관한 WTSA-04의 결정과 미국의 이의제기

- 정책 및 규제적 함의를 갖지 않는 기술적 권고 승인에 대하여 최소 회원국 거부권을 1개국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가 지난 WTSA-2000 이래 계속되어옴
- 최소회원국 수를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찬성하는 국가의 입장은,
  - 정책 및 규제적 함의를 갖지 않는 순수한 기술 권고 승인(AAP)에만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 기술권고 개발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국가 및 부문회원이 찬성한 사안에 대하여 1개 국가(특히, 기술권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의 반대로 권고가 승인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 기술권고 개발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절차의 안정성(certainty)을 인지시킴으로써, 회원 특히 부문회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임.
- 이에 반해, 이를 반대하는 국가의 입장은,
  - 동 사항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권고의 수가 극히 미미하며(768건 중 3건<sup>1)</sup>), 현재의 AAP가 원활히 운용되고 있으며,

1) 3건 중 1건은 해당연구반에서 권고의 내용이 변화한 환경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승인을 철회하여 실질적으로 1개 회원국에 의해 거부된 권고수는 2건임



- 거부권은 개별 국가의 주권(national sovereignty)이라는 것임.
- WTSA-04에서 총회(Plenary) 의장(Mr. S. Pinheiro, 브라질)은 최종 총회에서 회원국의 거수(擧手) 결과를 토대로 (1) 최소회원국 거부권 수를 1에서 2로 변경하고, (2) “차기 TSAG이 AAP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2)번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개정에 찬성한 국가와 반대한 국가간의 해석이 상치됨.
- 개정에 찬성한 국가(아태 지역의 APT 회원국, 아프리카 지역의 ATU 회원국가, 유럽의 CEPT 회원국가 다수)는 A.8 개정은 WTSA-2004에서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인데 반해,
- 반대하는 국가(미국을 비롯한 미주의 CITEEL 회원국가,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연맹, 러시아 등)는 WTSA 의장은 회의장의 무드(mood)만을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차기 TSAG에서 논의토록 지시하였으므로, 다음 TSAG에서 관련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나. TSAG(2005. 3월/11월) 및 2005 이사회 논의 사항

- 미국은 WTSA-04 의장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거부권은 회원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TSAG(2005. 3)과 이사회(2005. 7)에서 이의를 제기함
- 2005년 ITU 이사회는 AAP의 개정이 AAP를 개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훼손하는 것인지를 TSAG이 연구토록 지시하였고(이사회 Decision 528), 이에 관하여 지난 TSAG 회의(2005. 11)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됨
- 독일 및 이탈리아는 TSAG 회의(2005. 11)에 관

련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AAP 진행과정에서 규제·정책이슈가 포함된다고 1개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 권고 초안을 AAP 과정 시발점으로 회귀시키자고 제안함

## 2. TSAG(2005. 11) 논의의 핵심 이슈

- AAP의 승인 대상인 기술권고의 규제·정책 이슈 함의 보유가능성
- AAP는 순수 기술권고 초안을 승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원국의 특수상황에 의하여 규제적·정책적 합의를 보유할 수 있음
  - ※ WTSA 결의 40에서는 ITU-T 표준화 작업에서 규제적 함의를 갖는 분야로 이하를 규정하고 있음
    - 일반인의 통신권
    - 전기통신 채널과 설비의 보호
    - 고유번호 배정과 주소 지정과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사용
    - 전기통신의 비밀성과 신뢰성
    - 생명안전
    - 경쟁시장에 적용 가능한 관행
    - 회원국의 결정에 의해 파악되는 문제 또는 TSAG이 권고하는 문제 등 기타 관련 문제
- 승인절차를 선택하는 연구반 회의에 상기의 가능성을 보유하는 회원국이 참석하지 못하여 정책적·규제적 권고를 승인하는 TAP가 아닌 AAP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음
- AAP 개정의 회원국 주권(Sovereignty) 제한 가능성
  - 상기의 경우 거부권 최소회원국 수를 1에서 2로 개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주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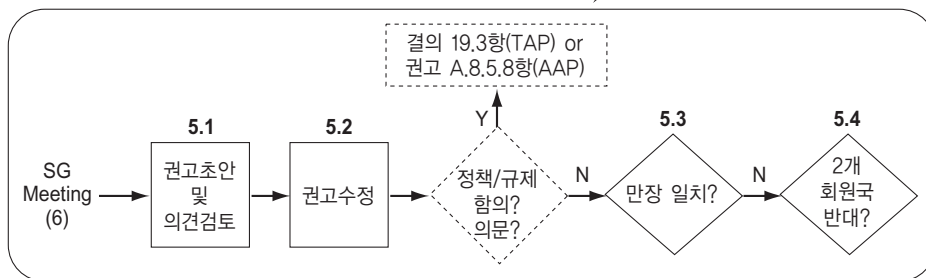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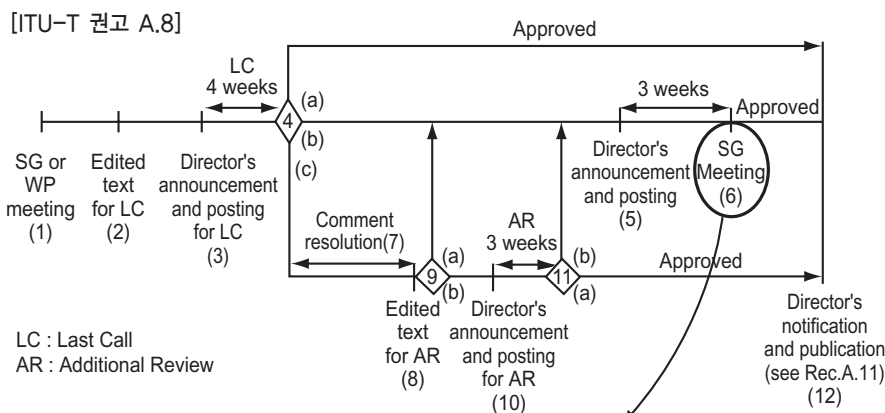
- 연구반 회의에서 정책/규제 관련 제기된 이의제기 거부 가능성
  - 연구반 회의에서 1개 회원국이 특정 권고의 규제적·정책적 합의 보유가능성을 지적하나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 의해 거부될 수 있음

- 다만, LC(최종검토)와 AR(추가검토)에서 제기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반 회의에서 “1개의” 회원국이 권고 초안에 규제적·정책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기하거나, 또는 규제적·정책적 합의가 포함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경우 연구반 의장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WTSA 결의19.3항(TAP)이나 권고A.8 5.8항(AAP의 시발점)으로 진행토록 결정함

### 3. TSAG(2005. 11)의 결정 사항

- 문제가 되어왔던 권고 초안에 대한 최소회원국 거부권 수 “2”는 수정하지 않기로 함. (권고 A.8 5.4항)

- 2006년 이사회에는 TSAG이 동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음과 권고 A.8가 개정되었음을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시리아의 요청으로 연구반 회의와 AAP 과정에서 결의 40을 적용해야 함을 연락문서로 ITU-T 연구반에 송부키로 결정함



[그림 1] 개정된 A.8(AAP) 절차도



#### 4. 향후 관찰사항

- A.8 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미국은 금번 TSAG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지하였음. 그러나, ITU-T 작업방법 관련한 WTSA 결의1 개정안에 협약(Convention) 및 WTSA 결의40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제안을 새로이 제출하였음.
- 동 제안에는 결의 1에 Domain 4(numbering, addressing)와 Domain 11(tariff, charging, accounting)은 TAP를 따르도록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협약(246E-H)과 WTSA 결의 40에 준하여 연구반 회의에서 TAP와 AAP를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 미국 제안(D.38)의 Annex가 기고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도착함으로 본 기고서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음. 다만,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CG(Correspondence Group)를 운영키로 함.
- 미국의 WTSA 결의 1 개정 제안은 A.8 개정과 강력히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연구반에서 작업하는 권고 초안이 규제적·정책적 함의가 아주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절차인 AAP가 아닌 TAP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동 사항의 논의(CG 논의 포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또한, 개정된 권고 A.8 절차에 의하여 AAP를 통해 승인되지 못하고 AAP의 시발점이나 TAP로 이전하는 권고 초안의 통계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도록 TSAG과 TSB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 5. AAP 이외 기타 TSAG(2005.11)의 주요 결정 사항

- 정상기고서(Normal Contribution)와 지연기고서(Delayed Contribution)의 구분은 없애고, 기고서(Contribution) 제출 마감일 2개월 이전에 도착하면, web을 통해 회원국에게 공지하고,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번역을 추진하고, 우편으로 송부키로 함
- 기고서 제출 마감일은 근무일(working day) 7일 이전이 아닌 달력일(calendar day)로 10일 이전으로 변경키로 함
- 에디터 및 라포치의 보고, 연락문서, 연구반 의장단의 입력문서, 그리고 TSB 문서는 TD로 하고, 기고서는 회원국 및 부문회원의 제안만을 위해 배정키로 함
- TD(Temporary Document)에 대한 명칭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변경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차기 회의로 논의가 연기되었으며, 다만 약어 TD는 그대로 유지키로 함
- IMT-2000과 관련한 SSG(현 SG19)의 작업방법에 관한 권고 A.9의 폐지가 SG19로부터 제안되었으며, 본 권고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작업방법이 ITU-T 전 연구반에 두루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별도의 권고를 두지 않고, 결의 1(연구반 작업절차)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만(결의 1의 6.1항)을 이전하고 권고 A.9은 삭제하기로 합의함
- ITU-T 연구반은 A.4, A.5, A.6에 의해 규정된 특정 외부협력기관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연구반 의장단과 사전협의 하여 타 기관과도 협력을 위한 연락문서를 적절한 형태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승인을 얻도록 함

-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후원 부문회원(최소 4개 이상)은 기존 회원이름뿐 아니라, 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원형태도 같이 표기하기로 함
- NGN 관련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NGN-GSI(Global Standard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부 기구와의 협력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RFID Technology Watch 활동 보고가 있었으나, 용어 정의와 응용, 네트워킹 및 보안 등 표준화 이슈, 그리고 각 연구반의 관련성 확인 등에

대하여 CG를 통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가 이루어져 이하와 같이 관련 CG를 확대개편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또한, 2006. 2에 있을 Networked RFID 워크숍과 CG의 활동을 연계하여 CG 활동을 내실화하기로 함.

- 총괄 : 이병남 (ETRI, 한국)
- 표준화 이슈 : 김용운(ETRI, 한국), N. Koshizuka(동경대, 일본)
-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시나리오 : Y. Sakurai(하다찌, 일본), 김형준(ETRI, 한국)
- 용어 및 정의 : T. Rukoski(베리싸인, 미국)

**TTA**